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514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C(D생)과 피고 사이에 2019.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2항(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의 C(D생)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최종 양수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소7685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3. 26. “C은 원고에게 18,947,182원 및 그 중 3,598,331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7. 확정되었다.

다. C의 부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G, H이 있었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3.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9.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포기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이가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C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분할협이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택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이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및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무자력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¹⁾,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환

1) 본안 전 항변에 해당하나,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쟁점이 없으므로 편의상 항변 단계에서 판단한다.